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(유효기간)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부칙 제2조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치되었음.

○ 안 부칙 제2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

기금의 존속기한(유효기간)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,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
- 충청북도 제2차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(2024. 8. 7.)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(2029. 12. 31.까지)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,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향후 대규모 체육 기반시설 조성 과 국제·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